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1차 보고서

- 화재 참사 원인규명과 과제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목 차

0. 들어가며	3
1. 사건 개요	5
2. 반얀트리 호텔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	9
2-1.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9
2-2. 늦어진 공사로 인한 무리한 공기 압박	12
2-3. 위험한 혼재작업, 그리고 법 위반	
2-4.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허가	14
2-5.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	18
3. 왜 대규모 피해로 확대되었을까?	23
3-1.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에서 소방관련 문제점	25
3-2.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범위반	35
4. 화재 참사 이후 문제점, 그리고 과제	41
4-1. 화재참사 이후 관계기관의 태도	41
4-2. 하청노동자에게 배제된 지원 대책	42
4-3. 과제	44
* 첨부 자료	45

0. 들어가며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52일 만인 4월 7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호텔 화재 참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하였음. 그리고 중간발표가 있기 3일 전 4월 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이자 원청업체인 삼성기업 박정오 회장과 박상천 대표 등 2명을 구속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삼성기업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하청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2명을 각각 구속함.
-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에서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1) 발화지점인 B동(카르마동) 1층 피트(PIT)룸에서 파이프 절단·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1층 천장 쪽의 배관 보온재로 옮겨 붙어서 발화됨. 2) 화기 작업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음. 3) 공사현장 내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았음. 결국, 시공사와 하청 업체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행위로 반얀트리 화재 참사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함.
- 하지만 관계 당국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중간 조사결과만으로, 왜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6명의 사망자와 2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왜 건설현장의 화재 참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었음.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더는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화재 참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보고서를 정리하게 되었음.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¹⁾)에서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진상조사팀을 구성하였고,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진상규명과 과제에 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함.
- 부산운동본부의 1차 보고서는 지난 4월 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 발표회에도 참석하지 못한 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상황이라 발표된 수사결과를 전부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자료와 정보 접근에 대한 여러 제약으로 언론 보도,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인터뷰,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구성하게 된 한계도 있음.

1)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산별노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26개 단체가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2022년부터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이번 1차 보고서는 관계기관이 확인하거나 제기하지 못한 영역인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허술한 허가 절차와 법 제도의 미비점,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기에, 현재까지 밝혀진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주목하고 드러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1. 사건 개요

- 2025년 2월 14일(금) 부산시 기장군 연화리에 있는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다수의 노동자가 용접, 절단 등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일하던 노동자 중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반얀트리 호텔 신축건물의 구조는 지하 3층, 지상 12층으로 구성된 3개의 호텔 동과 기타 별장 동 1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연 면적은 95,862,29m²임.
- 반얀트리 호텔 신축 건축물의 시행사는 '루펜티스 컨소시엄'이며 지우알엔씨와 삼정기업, BNK투자증권 등이 출자해 만든 회사이며, 시공사는 주)삼정기업(아파트 브랜드명은 '삼정 그린코아'임)와 주) 삼정E&C 임.
- 사고가 발생할 당시 40여 개 업체 841명이 전 층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화재가 시작된 건물은 B동(카르마동) 1층으로 당시 피트(PIT)룸-배관을 관리·유지·보수하는 공간-안에서 하청업체인 A업체 노동자들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파이프 절단·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음.



- 작업 지점 부근 바닥에는 아래층(지하1층)에 위치한 수처리실 천장으로 직접 연결된 천공이 다수 존재하였음. 이 천공은 위층으로 배관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으로 12개 중 10개가 뚫린 상태였음. 구멍의 크기는 직경 10cm, 깊이 20cm 정도였다고 함. 그리고 작업을 한 A업체는 화재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천공들을 방화포 등으로 덮거나 막지 않은 채 화기 작업을 시켰으며, 용접·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구멍을 통과해 지하 1층 수처리실 상단부에 설치된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최초 발화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됨.
- 화재 당시 CCTV 기록에는 2월 14일 오전 10시 47분에 피트 실에서 연기가 조금씩 흘러 나오기 시작했고 49분에 지하 1층 수처리실에서도 까만 연기가 나오다 삼시간에 퍼졌다고 함. 5분이 채 되지 않았던 짧은 시간 만인 52분에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연기로 가득 차게 됨.
- 6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장소는 1층 화물 승강기 앞쪽으로 발화지점과는 다소 거리

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경찰에서 발표한 바로는 지하 2~3층에서 작업 도구를 챙긴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들어찬 연기를 피해 1층에서 내려 대피하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연기에 흡입되었음. 결국, 연기에 질식되어 6명이 사망하였고, 27명이 부상을 입게 됨.

- 당시 사망한 지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2대인데, 화물용 승강기 1대만 운행하였고, 1층 위로는 화장실이 없었기에 화장실 사용을 위해서라도 1층이나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음. 작업을 위한 자재나 물품 등이 대부분 1층 또는 지하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기에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함.



- 6명의 사망자는 4개의 하청 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사망자 중에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당일 처음으로 일을 한 노동자도 있었음.
-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 현장은 토목공사부터 공사가 늦어져 골조공사도 늦어진 상황이었으며, 12월 19일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까지 전 층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2025년 2월 14일 오전, 화재 참사 발생 시 피해자 이동 경로>

- => 2월 22일 유가족이 화재 참사 현장방문 후 경찰에게 들은 설명을 정리한 내용
- => 사망자들 모두 작업 층이 다름에도 1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됨.

피해자	이동 경로
김00님	B동에서 소속된 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정리와 청소 작업

	을 담당함. 화재 참사 당일 폐기물을 모두 모아서 지하 2층에 가서 폐기한 후 지하 2층에서 승강기를 타는 것까지 확인함.
양00님	천정 타일 작업을 위해서 3~4층 왔다 갔다하며 일하였음. 자재를 가지러 지하 2층에 갔다가 승강기 타는 것까지는 확인함.
조00님	A동 12층에서 청소 일을 담당하심. 지하 3층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가 다른 동료와 함께 지하 2층에서 청소도구(빗자루) 가지러 갔다가 지하 3층에서 승강기를 탐.(지하 2층과 3층이 연결된 구조임)
홍00님 김00님	피해자 두 분이 같은 작업조임. 지하 2층에서 트럭으로 가구를 가져오면 지하 2층에서 내리는 조(2명) 한 팀, 옮기는 조 한 팀(2명)이 있었는데, 두 분은 옮기는 조였음. 가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강기를 타게 됨.
이00님	8층에서 2인 1조로 도배작업을 함. 지하 3층에 도배작업 발판을 가지러 갔다가 승강기를 타게 됨.

사진출처 : 윤건영의원실

- 화재 발생 당시 1층에는 이미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실제 유도 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에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상 방화구획에 맞게 방화문과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했지만, 화재 이후 확인한 바로는 사용승인 당시의 도면과는 다르게 방화문과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훼손되어 있었기에, 그로 인하여 화재와 유독 가스 등이 1층 전체로 확대되어 유입된 상태였기에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됨.



사진설명 : 부산 반얀트리 화재가 발생한 지난 2월 14일 연기가 가득차 작업자들이 손전등을 켜고 탈출구를 찾고 있는 모습 (부산 경찰청 제공 CCTV 영상)

* 피해자 현황

1) 인명피해 현황

- 사망자 6명, 부상자 27명 / 소방대원 1명 부상 (출처 ; 부산기장소방서)

	성명	성별	연령	주증상	이송병원	중증도
1	김○○	남	64세	CPR	해운대백병원	이송 후 사망
2	조○○	남	44세	"	"	이송 후 사망
3	양○○	남	51세	"	좋은강안병원	현장사망
4	김○○	남	66세	"	기장병원	이송 후 사망
5	이○○	남	72세	"	원자력병원	이송 후 사망
6	홍○○	남	52세	"	동래봉생병원	현장사망
7	이○○	남	50대	연기흡입	하나병원	
8	송○○	남	36	"	화창한병원	
9	이○○	남	61	"	온종합병원	
10	조○○	남	61	"	"	
11	박○○	남	27	"	×	
12	서○○	남	52	"	×	
13	김○○	남	37	"	×	
14	이○○	여	55	"	×	
15	이○○	남	62	"	×	
16	우○○	여	58	"	좋은삼선병원	
17	이○○	남		열상(오른뺨)	양산부산대병원	
18	전○○			연기흡입	해운대백병원	
19	강○○			"	"	
20	이○○			호흡곤란	화창한병원	

21	이○○	남	52	연기흡입	×	
헬기구조자 중 귀가 (12)						

2) 사망 노동자 현황(출처 : 부산운동본부)

	성명	연령	소속	입사	거주
1	김○○	64세	하도급/천정작업 (라이프하우징)	24.12.06	부산
2	조○○	44세	원도급	24.11.07	부산
3	양○○	51세	하도급 (라이프 하우징)	25.02.07	부산
4	김○○	66세	하도급/가구설치 (리바트)	25.02.14	부산
5	이○○	72세	하도급/도배작업	24.12.17	서울
6	홍○○	52세	하도급/가구설치 (리바트)	25.02.14 (확인필요)	경기도

2. 반얀트리 호텔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문제점

- 부산운동본부 진상조사팀은 2월 14일 발생한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의 원인을 주요하게 확인하고자 하였음.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1)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2) 늦어진 공사로 인한 무리한 공기 단축 3) 위험한 혼재 작업, 그리고 법 위반 4)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허가 5)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였고, 살펴보았음.

2-1.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1) 시공사와 발주처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작업자 면담을 통하여 공통으로 확인한 문제는 시공사와 발주처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의 문제였음. 특히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현장은 1,595억 원의 공사금액이 소요되는 대형 신축공사 현장으로 발주처와 시공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중점관리를 해야 함. 그리고 대규모 공사의 시공사로서 삼성기업과 삼성 E&C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이행점검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골조공사, 내부공사, 참사 당시 일했던 작업자와의 면담에서 아래와 같은 현장 상황을 확인하였음. 안전보건을 관장하기는커녕 외부컨설팅업체에 통째로 맡긴다거나, 1년 4개월 정도 골조공사 작업자들이 일한 동안만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가 2~3번 이상 바뀐 상황, 그로 인하여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원청이 해야 할 역할을 미루거나 안전보건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10월경에 건축 시공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내부공사로 많은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하였고, 유해위험작업을 하였음에도 시공사로서 해야 할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총체적으로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가 부재한 상황이었음.

“외주 업체에 안전을 맡기는 방식요. 안전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까마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친해지니까 그렇게 자주도 안 오고, 그렇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일했던 거 같아요. 그냥 안전이 좀 할랑했던 거 같아요. 안전이 할랑할랑하다 보니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어요. 원청에서 안전 문제가 있으면 하청에도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청에서 그쪽으로 다 밀었어요. 자기들이 해야 할 것들을요.” - 작업자A

“이 현장은 좀 심했어요. 다른 업체에 비하면 정말 많이 심했어요. 내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이 현장 삼정에서 하는 거 맞나 이랬어요. 그래도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인데... 무슨 마찌꼬바 공장도 아니고 이게 뭐고 도대체...그래도 탈이 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번 일 터지고 나니까 그때 내 느낌이 맞았어요. 진짜 이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업자이면 대부분 원청업체 통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봐도 저도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내가 봐도 이걸 아닌데 느낌이 오더라고요.” - 작업자B

“사고율을 줄이려면 안전 담당자가 계속 귀찮게 해야 사고가 적게 나는데 여기는 조금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어요. 오히려 작업자는 너무 편한 현장이었죠. 안전관리자가 잘 안보였고, 다른 회사보다 배치된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보이면 흡연장소가 아닌데도 현장에서 담배도 필 정도였어요.” - 작업자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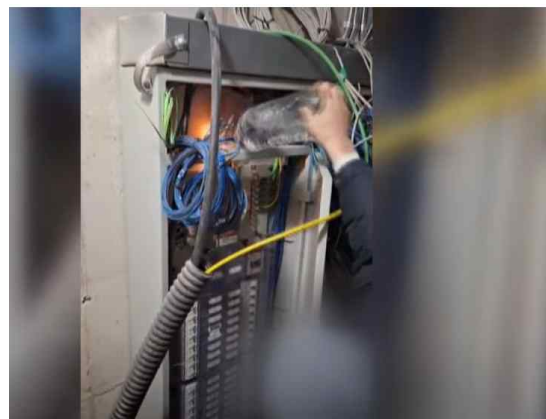
“문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원청 관리자가 없는 게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현장에 나와서 관리도 하고 중재도 해야하는데...근데 뭐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감리자도 저와 같이 일하는 동생은 한번 봤다고 하는데, 저는 3개월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 작업자B

2)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는 하청 업체 안전보건관리 공백으로

- 시공사에서 전체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을 하지 못하는 과정은 결국 하청업체 안전보건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게 됨. 부산시 경찰청의 화재 참사 조사결과를 보면 화재 참사 당일 A하청업체는 피트(PIT)룸에서 배관 연결을 위한 파이프 절단·용접과 같은 위험한 화기 작업을 하였지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현장에 없었으며, 더욱 문제는 업체의 안전보건관리자 또한 2024년 12월에 퇴사한 뒤 선임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도 없었고 불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도 준수하지 않았음.
- 하청 업체의 이러한 불법적인 작업행위에 대한 작업중단 요청이나 법 준수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시공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고 결국,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음.

3) 이전 화재사고의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 부재

-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가 발생하기 6일 전에도 현장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제보를 통하여 확인됨. 하지만 사고 발생 후 화재 발생 신고는 없었으며, 원하청 모두 사고에 대한 원인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또한 전무 했던 것으로 추정됨. 만약 6일 전 화재사고 발생 시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고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시공사에서 화재 발생 원인파악과 함께 전체 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였다면, 노동부에도 보고가 되어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2월 14일 화재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어도 큰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 사진 출처 및 설명 : 3월 10일 자 SBS 뉴스에서 보도된 영상이며, 영상에서는 전기시설이 가득한 전기단자함에 불이 났는데 작업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생수를 부어서 불을 끄는 모습임. 급한 상황이라든가 전기단자함에 바로 물을 붓는 위험천만한 모습과 불을 끄는 작업자조차 이러한 행위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음.

4) 시공사의 안전관리 부재는 산재 사고로 이어져

- 시공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는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 이전부터,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산업재해 발생으로 드러났음. 작업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의 매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며, 너무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반얀트리 호텔 ‘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함.

질문 : 반얀트리 공사현장이 다른 현장하고 좀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답변 :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터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거 같아요. 많이 날 때는 거의 매일 사고가 났어요.

질문 : 발목 다쳤을 때 산재로 하셨나요?

답변 : 뼈긋한 정도라 4일 정도 쉬었어요. 하지만 공상으로 일당을 다 받았어요. 병원 치료비도 받구요.

질문 : 다른 분들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텐데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답변 : 다른 분들은 다쳐서 나가게 되었고, 이후 산재 처리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질문 : 산재처리를 하기는 했네요?

답변 : 본인이 신청했었구요. 사고로 산재처리 된 것이 몇 건 있을 거예요.

질문 : 근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삼정이나 업체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답변 : 사고 나면 다음 날 전체 TBM을 00소장이 해요. 근데 사고 나면 그뿐인 것 같아요. 사고 나기 전에 뭐 이런 조치를 하기보다는 사고 나면 안 된다 정도만 해요.

질문 : 원인을 파악한다거나 아니면 대책에 제안한다거나 하지는 않나요? (네)

- 답변은 작업자 A

- 인터뷰한 작업자조차 발목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함. 심한 부상이 아니었기에 공상처리로 치료를 받았지만, 거의 매일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이니 이러한 방식으로 산업재해 은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더불어 자주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원하청 업체 모두 사고에 대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안전보건교육, TBM을 통하여 사고를 주의하라는 전달만 하지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과 원인 해결을 위한 실행과 공유는 미흡했던 상황으로 파악됨.

2-2. 늦어진 공사로 인한 무리한 공기 압박

1) 임박한 분양 계약에 맞춘 무리한 작업 강행

- 분양 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준공예정일은 2024년 11월이었으나 한 달 늦게 사용승인이 난 상황이었음. 이용예정일 또한 2025년 2월이었으나 반얀트리 호텔의 공사 진척은 더딘 상태였으며, 심지어 2월 중순이었음에도 시공조차 완료하지 못하였음. 만약 분양 계약 등의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위약금 발생은 물론 입주분쟁 등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에 작업자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다는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는 상황이 되었음. 언론 보도에서도 입수한 분양계약서 약관에 따르면 분양자들은 이용예정일부터 3개월 안에 리조트를 사용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이미 공사 초기부터 늦어진 상황이었으나 화재 참사 당시에는 반얀트리 호텔 안팎으로 높은 강도의 무리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

; 분양계약서 관련 언론보도 - 2025년 2월 19일 KNN 뉴스 보도²⁾

2) 토목공사부터 늦어진 공사는 무리한 공기 압박으로

- 반얀트리 호텔 착공신고서에는 준공예정 일자가 2024년 11월 24일 임. 하지만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는 토목공사부터 공사가 늦어지게 되면서 이후 골조공사도 늦어지게 되었고, 골조공사 이후 진행해야 할 내부공사- 인테리어 공사, 소방공사, 전기 공사 등-도 모두 늦어진 것으로 확인됨. 2024년 7월경에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제 6월 말이 되었음에도 골조공사 자체도 80% 정도 공사가 진척된 상태였다고 함.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내부공사 시작도 A, B, C동이 다르게 시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3개월은 늦게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건설현장의 마무리 공정은 벽체조성공사, 마감바탕공사, 바닥미장공사, 최종마감공사로 크게 나눌 수 있음. 하지만 반얀트리 호텔은 리조트 건물이기에 객실부터, 로비, 수영장과 헬스장 등 엄청나게 다양한 시설물을 갖춰야 하는 건축 구조물임. 이러한 상황에서 빠르게 공사를 해야 하기에 업체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면서 작업을 시킬 수 없었거나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위험한 작업임에도 혼재 작업을 해야 했음. 2월 14일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큰 용접·용단 작업을 하였음에도 화재예방조치를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늦어졌죠. 보통 토목공사에서 공사기간을 까먹으면 저희가 바빠요. 토목공사에

2) 분양계약서 관련 언론보도 링크 : (<https://news.knn.co.kr/news/article/169142>)

서 땅을 암석이 있거나 뭐 이러면 그게 늦어지는데 보통 토목공사에서 늦어진 거죠.... 토목공사에서 늦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토목 공사도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골조공사도 늦어지게 되었죠.” - 작업자 A

“원래는 가을쯤 들어가기로 했지요. 샘플 잡고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승인 받고 자재 샘플 보고 자재 색깔 보고 이런 거 파악하고 이러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샘플 잡고 나면요. 그때가 8월 중순쯤에 들어갔으니까 한 9월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들어갈 줄 알았죠. 결국 11월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한 달 전에 들어온 팀도 일을 못 했어요.” - 작업자 B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면 음식도 마찬가지로 더 맛있게 하고 하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이 막 쫓기듯이 작업을 하면 보통 밑에 볼통 떨어지면 저도 그렇습니다. 작업하다 스티로폼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 식구에게도 이거 좀 치워라 혹시 모르니까 소화기 갖다오라고 하는데.. 바쁘면 안 보이고 그냥 내 작업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나도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 작업자 B

“이제는 통제도 안 되고 작업자들.. 그리고 작업자도 지금 거의 마지막 작업이나 마지막 팀 공정도 있으니까 빨리하고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무조건 빨리하라고 했고, 이번 달 말까지 날짜를 뜬금없이 잡아주면서 하라고 하는데 저도 황당했습니다.” - 작업자 C

3) 시공사의 관장 부재는 또다시 공사 지연으로 작용

- 시공사의 공사 관장 부재는 늦어진 공사 일정을 더욱 늦어지게 하였음. 40여 개 업체가 동시 작업에 투입이 되면 선 후 공정이 순서대로 되어야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음. 수습 공정의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기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래의 사례와 같이 이미 작업했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뜯어서 이미 선행공정으로 마무리 했어야하는 부분을 재 작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더욱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함. 이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는 작업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에도 하청업체에게 사전 공유하지 않아 자재반입 등 차질이 많았음. 시공사의 미흡한 공사 관장은 지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기에 공사는 더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공기 단축의 압박은 더 받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설비 전에 우리가 천장을 덮을 수가 없듯이, 그 천장 안에 배관도 해야되는데....공정 간에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도 수습 공정이 있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관리가 들어가고 일도 시켜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뒤죽박죽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해놓은 것도 뜯었습니다. 거의 다 이만큼을요... 왜 뜯었냐니까 위에 설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원청에서요.” - 작업자 B

“그냥 아침에 뜯금없이 오늘 에폭시 작업하니깐 차량 못 들어갑니다. 자재 못 넣습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어제라도 이야기 해주면, 자재를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면 어제 자재를 안 시켰을 거 아닙니까? 자재는 벌써 아침에 와서 내리라고 하고 자재 화물차 기사도 왔는데 안된다고 하면 어디다 놓을까요? 막판이니깐 항상 그랬다니깐요. 물론 어디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좀 심했어요. 모든 것이....” - 작업자 B

2-3. 위험한 혼재 작업, 그리고 법 위반

1) 사고 발생 당시 40여 개 하청 업체 투입, 작업자 841명

- 대부분 건설현장의 신축공사 마무리 공정 순서는 벽체조성 공사, 마감바탕공사, 바닥미장공사, 최종마감공사 등으로 나눌 수 있음. 적정한 공사기간이 주어지고, 마무리 공정이라도 순서대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다면 혼재작업을 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하지만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 현장은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여러 공정이 한꺼번에 혼재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임.
- 사고 발생 당시 40여 개 하청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연성 높은 인테리어 자재가 주변에 많이 적재되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용접·용단·도장 등 혼재되어 작업이 진행되었기에 화재 발생의 위험이 컸던 상황이었음. 더욱 문제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안전한 건축물 구조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던 상황이라 결국 이러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되었음.
- 이러한 문제는 매년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한 상황임.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사고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 파악과 예방이 중요하며 이번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소방청에서 분석한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부주의*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꽂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부주의 : 흡연, 우레탄 폼 작업, 고형알코올 사용 작업, 페인트(시너) 작업 등

구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합계	사망	부상	
2018	889	98	7	91	45,910,408
2019	781	52	4	48	10,195,342
2020	691	90	39	51	19,526,267
2021	655	53	3	50	10,518,795
2022	774	42	3	29	23,980,363
합계	2,361	240	50	190	110,131,175

(단위 : 건, 원 / 출처: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의 문제

- 화재참사 당일 B동(카르마동) 1층 배관실(PT룸)에서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의 화기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뚱 등이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떨어지면서 발화되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함. 이 과정에서 불티비산방지 덮개와 방화포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전혀 되지 않았기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음.

- 호텔에 소방시설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현장은 스프링클러, 유도등, 방화문, 방화벽, 화재감시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으며 작동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 더불어 화재 발생이 높은 작업을 할 때는 화재 감시를 전담하는 화재감시자조차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음.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³⁾ ① 사업주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사업주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사업주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3) 부실한 소방점검의 문제점

- 화재 참사 발생 전인 2월 11일부터 소방점검(2년 전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신축 건물은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자체 소방점검을 하고 15일 이내 결과 제출)이 진행되고 있었음. 화재 참사 4일 전부터 진행한 소방점검에서 반얀트리 신축공사장 전체의 소방시설과 사용승인 시 제출한 소방시설 완료보고서의 내용처럼 제대로 설치되어 있고, 가동되는지를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했음. 하지만 시행사가 선정한 소방 전문 업체에서 실시한 소방점검이었기에 법 위반사항이나 현장의 문제점이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소방점검에서 사전에 문제에 대한 보완 조치와 긴급하게 작업중지를 하였다면 이번 화재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음. 또한, 화재 참사 당일 소방점검을 하고 있었기에 현장은 더욱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실제 소방점검 과정에서 화재 경보음이 자주 울리면 사이렌 소리를 들어도 오보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고, 심지어 당시 화재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는 화재가 발생하기 2~30분 전부터 사이렌 소리가 났었지만, 화재 발생 당시에는 오히려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4) 형식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화재대피 훈련 미실시

-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대부분은 시공사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 달에 한 번은 받았다고 함. 하지만 교육시간은 3~40분 정도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1조 조항임.

으며, 교육 내용도 반얀트리 현장과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간단한 공유와 ‘조심해서 일해야 한다’는 수준이지,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 위험성 평가 및 개선과 같이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에 필요한 내용은 없었다고 함.

- 일 시작한 첫날이 화재 참사 당일이 되었던 노동자는 일하기 전 알아야 할 현장 상황과 건축물 구조, 대피방법 등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이나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바로 작업을 해야 했기에 화장실 위치도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골조공사와 11월부터 일을 시작한 노동자도 화재발생위험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나 화재대피 훈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 최근 노동부에서 강조하는 건설현장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인 TBM(Tool Box Meeting)도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전체 작업공정과 위험요소 내용을 공유한 후 업체별로 TBM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마무리 공정으로 갈수록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함.

“안전 교육할 때 보면 오늘도 이래이래 다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고가 안 나려면 좀 천천히 일해야 한다고 교육해야 하는데 오늘도 다쳤으니까 안 다치게 조심하라고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냥 앉았다가 오는 거지요.” - 작업자 B

“질문 : 시공사에서 하는 안전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나요?”

답변 : 사건 사고 있었던 거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했던 위험한 작업을 사진 찍은 거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거, 그런 위험 요소 그런 거 가지고 교육을 하죠.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도 시청하구요.

질문 : 교육은 좀 도움은 되시던가요?

답변 :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 작업자 A

“현장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공터나 이런 데 모아가지고 TBM을 하면서 오늘 작업 중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도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아침에 한 10분 책임자가 이래저래 말만 몇 마디하고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그런데 뒤에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그냥 마이크만 하나 간단하게 있는데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들리지 않았어요.” - 작업자 C

2-4.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 허가

1)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의미

- 건축 및 시설물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임. 건축물의 사용승인 허가란 건축물의 시공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뜻하며, 소방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임. 그렇기에 사용승인 과정에서 완공된 건물이 설계 및 시공 기준에 적합한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완료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임.
- ‘사용승인’ 절차의 목적은 1)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2) 건축법, 소방법, 전기설비법 등 관련 중요한 법규준수 여부 확인 3) 합법적 건축물의 인정 4) 건축물의 실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모든 행위를 말함.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기한은 보통 공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이며, 사용승인서가 발급되면 건축물의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됨.

대상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
신청주체	건축주 (루팸티스 주식회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 등등 (페이지 47참조)
검사내용	1. 서류 확인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완료보고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2. 현장 점검 - 담당 공무원 또는 기술진이 현장에 방문하여 실제 시공 상태를 점검 함. 주요 점검사항으로 구조 안전성, 배수시설, 소방 설비, 전기 설비 등임.
결과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
허가권자	관할 지자체 - 기장군청

2)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 발급

- 부산시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반얀트리 리조트 준공도면(방화계획도)에 따르면 불이 난 B동 1층은 모두 3구역의 방화구획을 나눠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당시 도면에는 화재가 처음 시작된 1층 PIT실 구역과 피해자들이 발견된 구역은 각각의 방화구획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했음에도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건축 도면상 방화구획 위치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방화 셔터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방화구획 자체가 형성될 수 없었고, 그로인하여 피해자들이 발견된 장소까지 연기가 급속도로 번졌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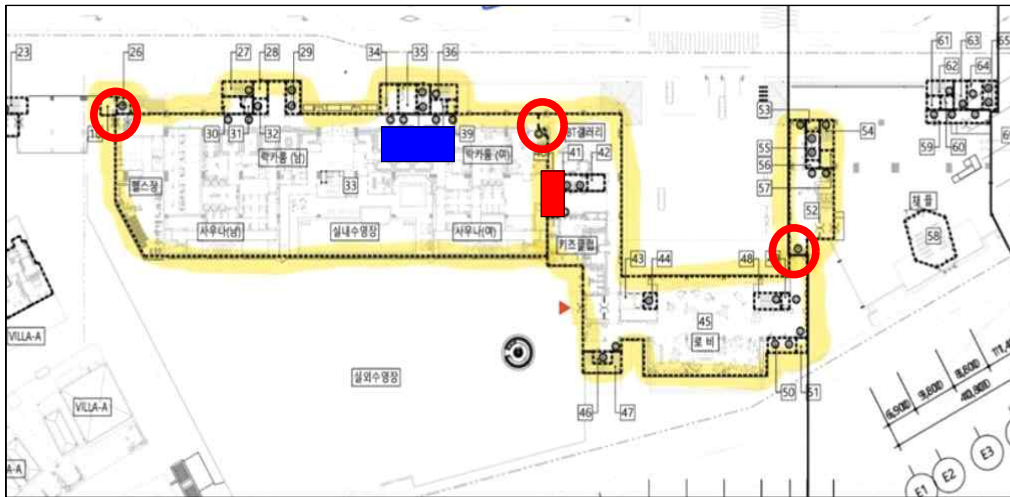


그림 12. 준공과정에서 건축주가 제출한 B동 지상 1층의 설계도면임. 형광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방화구역이고, 3개의 등근 붉은 색 표시가 방화구획으로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붉은색 네모는 PIT실(발화지점), 파란색 네모는 사망자 발견장소, 출처 : 소방방재신문

- 하지만 기장소방서는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 이러한 각종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였는지, 소방공사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감리업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함. 현행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선 소방공사 감리자가 지정된 경우 소방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11층 이상 건물 등 비교적 위험성이 높은 곳들인데, 반얀트리 호텔은 연 면적 9만㎡가 넘는 대규모 숙박 시설이기에 현장 확인을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기장소방서는 소방업체 감리업자가 제출한 감리결과보고서만 보고 현장검증 절차 없이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마무리한 것임.
- 12월 16일 현장검증 절차 없이 기장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발급하였고,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은 이를 근거로 또다시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12월 19일 사용승인 허가를 하게 됨.
- 4월 11일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건축공사장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기장소방서 소속 소방위와 다른 소방서에 재직 중인 소방령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음. 4월 17일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장군청 공무원과 공사 업체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 2명과 협의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화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됨.

- 12월 16일 현장검증 절차 없이 기장소방서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발급하였고,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은 이를 근거로 또다시 현장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12월 19일 사용승인 허가를 하게 됨.

- 4월 11일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건축공사장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기장소방서 소속 소방위와 다른 소방서에 재직 중인 소방령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음. 4월 17일 경찰은 반얀트리 호텔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장군청 공무원과 공사 업체 사이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 2명과 협의부서 공무원 2명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와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언론 보도됨.

3) 행정기관의 부실한 ‘사용승인’ 허가를 가능케 한 법제도 한계

-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이 현장검증을 꼭 거쳐야 하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반얀트리 호텔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노동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 및 공사완료보고서 등이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등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실제 반얀트리 호텔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기장군청 관계자는 “건축주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관계 부서가 서류를 검토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내린다”며, “사용승인 이후 해당 건물에서 계속해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사고 이후 현장을 찾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함.
- 이처럼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승인 절차가 이뤄지는 절차에 대한 현장 점검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소방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감리업체의 보고서만을 믿고 소방필증을 발급하는 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건물 준공의 최종 점검 단계인 ‘사용승인’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교차 검증을 필수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함께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 최초 소방점검도 시행사가 선정한 소방업체에서 소방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 또한, 국가기관의 현장검증이 빠져있는 사각지대이기에 소방당국이 아닌 건축주 측이 자체 점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제도 역시 개정해야 함.

4) 실제 준공허가(사용승인)가 가능하지 않았던 현장

-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월 14일까지 두 달이 지난 상황이지만 사용승인이 완료되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신축 현장 곳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3. 화재참사 이후 호텔 주변에서 확인한 공사 진행 중인 모습. 출처 : 소방방재신문

- 이뿐만 아니라 C동 외벽 곳곳엔 아직도 1층부터 10층 넘는 철제 임시가설물(비계)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옥상 부근에도 철골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등 건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음. 그리고 조경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주변 철근, 나무 합판, 대리석 등의 자재가 수북이 쌓여있음), A동과 별장동 사이의 1층 외부공간 수백 평은 흙바닥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음.
- 전문가들은 “건축 사용승인이라는 건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전기와 수도, 문, 조명 등 모든 것이 정상인 상태를 말한다.”며 화재참사 당시 반얀트리 호텔 현장은 “사용승인이 된 건물이 아니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⁴⁾”이라고 지적함.
- 더욱 문제는 모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허술하게 사용승인이 난 상황이라, 오히려 공사 중이었다면 필요한 안전인력 배치나 임시소방시설 설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결국, 이러한 부실한 사용승인은 이번 화재참사와 같이 오히려 공사장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 규정의 적용조차 배제되어 사각지대를 유발하기에 이번 화재참사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반얀트리 호텔 내부의 소방시설 문제점 (자료 출처 : 윤건영 의원실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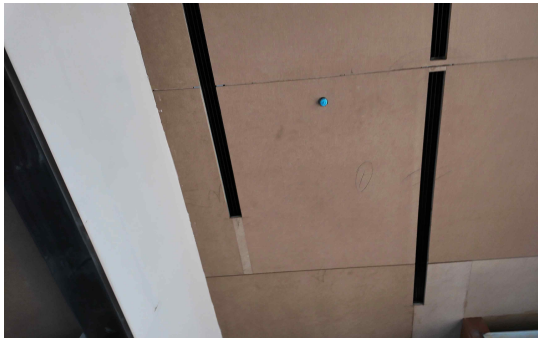
4) 출처 : 소방방재신문



커버가 씌워진 화재감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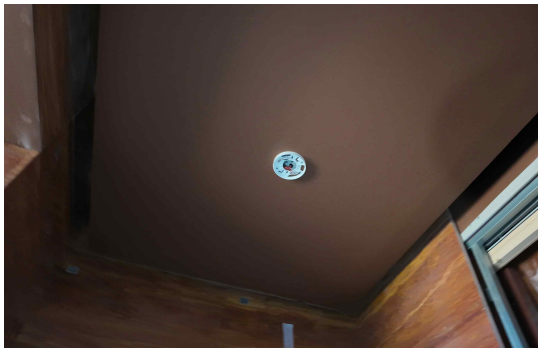
소화전함이 설치되지 않은 옥내소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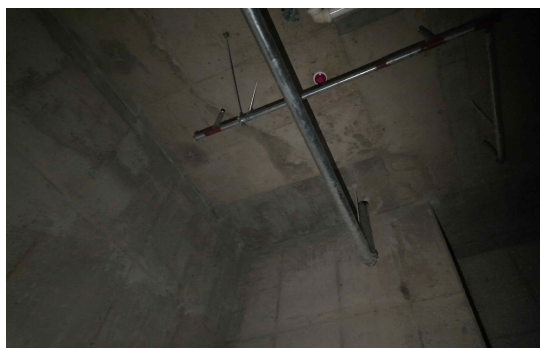
커버가 씌워진 스프링클러 헤드



고정조차 안 된 스프링클러설비



몸체가 없이 탈락된 화재감지기



커버가 벗겨지지 않은 화재 감지기

2-5.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원인

1)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의 문제

- 대부분 건설현장은 아래와 같은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발주처로부터 공사 계약을 따낸 원도급자가 종합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업체는 실질적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건설업체 소속의 노동자는 소수이며, 대부분 팀 형태로 투입되어 일하거나 인력업체를 통하여 들어오는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하는 형태임.
-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는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공사를 담당하고 있기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고, 하도급 업체에

서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어서 원하청이 함께 안전관리가 그나마 가능한 구조이지만, 마무리 공정으로 갈수록 많은 수의 하도급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고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많기에 시공사의 안전보건총괄의 관장력과 중재가 더욱 커져야 함. 하지만 앞서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시공사인 삼성기업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터라 화재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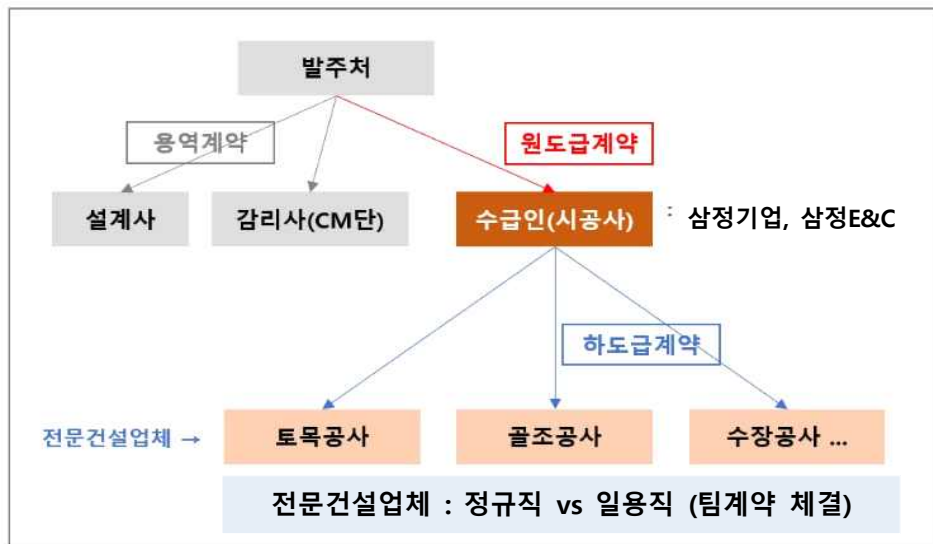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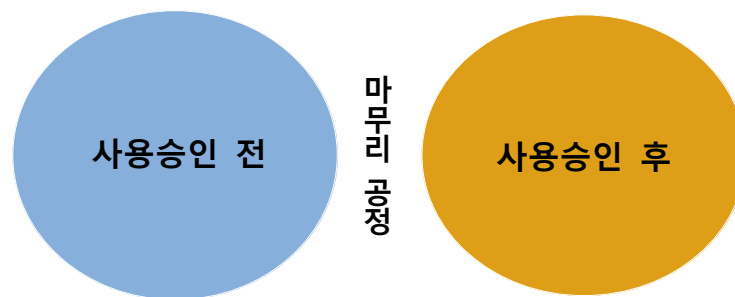
그림 20.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 출처 : 한국PM

2) 마무리 공정에서 완전히 실종된 안전보건체계

-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는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의 압박 하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화재 참사임.
- 사용승인 허가 과정에서 실제 있어야 할 건축구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구조물을 해체하면서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참사가 된 상황이었음.
- 화재참사를 만들게 한 반얀트리 호텔 공사현장의 특수적인 문제도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이지만, 구조적으로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큼. 특히 마무리 공정에서 40여 개의 소규모 하청업체를 관장하고 중재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의 태생적인 한계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3) 건설현장의 사용승인 이후 마무리 공정 행태

- 이렇듯 건설현장의 마무리 공정은 매우 중요한 공사이기도 하지만 혼재 작업의 가능성이 높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완료가 되어야 함. 하지만 실제 작업자의 인터뷰나 언론 보도를 보면 공사기간의 문제 등으로 건설현장의 마무리 공정은 관행적으로 사용승인 이후에도 많이 한다고 함.
-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하게 한 원인이 되었음. 사용승인 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의거하여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함. 그리고 사용승인 이후는 이미 건축물 구조에 소방시설이 완료된 상태이기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화재 참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했음. 건설현장에서 사용승인 이후에도 하는 마무리 공사 관행을 제대로 규제해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도가 현장검증을 통하여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3. 왜 대규모 피해로 확대되었을까?

3-1.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소방 설비의 문제점

- 화재참사를 키운 소방설비의 문제는 소방설비의 미비, 미작동, 불량 유지보수, 소방 대응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함.
- 스프링클러 밸브 폐쇄 및 소방설비 미비가 화재피해를 확대시켰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소방시설 고장 및 방화구획이 미비했던 청라 아파트 화재 참사, 소방설비 미비 및 방연/난연처리 되지 않은 자재 사용으로 피해가 커졌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작업은 화재폭발위험이 있어 동시에 수행해서는 안 되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 화재참사등 수많은 화재참사의 원인으로 소방설비의 미비가 지적되어 왔음.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경우 사용 승인이 난 건물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 중 소방설비의 변형 및 작동 중단 가능성, 인테리어 자재의 적재 등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음.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 현장은 아예 기본적인 소방설비 자체가 대부분 미설치 된 상태였음. 공사감리결과대로 소방시설 공사가 이뤄졌는지 현장확인 없이 사용승인이 났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되었지만 소방계획서는 작성조차 되지 않았고, 소방시설의 작동 및 법률에 맞는 부품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최초점검'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해야 했음. 더군다나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자료조사 과정에서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중이었을 명백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결국 화재가 참사로 이어졌음.
- 아래의 내용은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화재가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반얀트리 화재참사의 원인을 정리한 것임.

1) 필수적인 화재안전장치인 방화구획조차 미설치

- 2025년 3월 6일,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은 화재현장 감정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상 1층 피트실(PT룸) 작업에서 발생한 불뚝 등에 의해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 등을 매개로 최초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PIT룸 바로 아래층 천장부를 발화지점으로 특정했음. 화재가 PIT룸 아래층 천장에서 시작해서 지

하층에서 위층으로 확산하였다는 것임.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가 층간을 넘어 확산되고, 같은 층에서도 각 동으로 확산된 것을 볼 때 수직방화구획(층간 화재 확산 방지), 수평방화구획(같은 층내에서의 화재 확산 방지) 모두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음이 확인됨. <<FPN-소방방재신문>>은 현장 파악후 “PIT룸의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에는 내화채움재만 안착되어 있고, 시공되어야 할 방화실란트와 차열제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확인함. 내화채움구조란 방화구획은 설비관통부 등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음.
- 현장을 확인한 <<FPN-소방방재신문>> 은 ‘건축 도면상 방화구획이 위치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방화셔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방화셔터 설치 옆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는 고정식 방화문도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방화문을 벽면에 고정하기 위해 벽면부 결쇠장치가 시공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방화문이 없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음.
- 결국 건축법상 가장 필수적인 화재안전구조(방화구획 부재, 방화문 및 방화셔터 부재, 내화채움구조 부실 등)가 설치되지 않은 채로 준공 승인이 났다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 급수관·배전관 또는 그 밖의 관이나 전선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하여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나. 방화구획의 벽과 벽, 벽과 바닥, 바닥과 바닥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다. 방화구획과 외벽 사이에 접합부가 생기는 경우

라. 방화구획에 그 밖의 틈이 생기는 경우

2) 현장 검증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

	부산광역시기장소방서	
수신 (주)대한이엔지 귀하 (검유)		
제목 (문서24)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교부[연화리 446, 오시리아별장형콘도]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신청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같은 법 14조(완공검사) 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부사항 건축주에게 비상구 관리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유지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1부. 끝.		

- 2024년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 완료한지 3일 만에 반얀트리 호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음. 반얀트리 호텔은 연면적 9만㎡가 넘는 건축물이자 다중이용시설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대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임. 또한 반얀트리 호텔은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가연성가스검지경보설비, 불연성가스검지경보설비, 지하층에 설치된 비상방송설비, 환기설비, 연기제어설비, 방화셔터, 방화문, 방화구획설비, 경보설비, 지하층에 설치된 비상계단, 방화벽,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펌프, 소화용수탱크, 소화물질 저장소, 소방차 진입로, 소방수신반, 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의 일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소방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 배관에 설치된 밸브를 잠가놓았고, 비상방송 설비 또한 작동정지 상태로 두면서 정상 작동을 하지 못했음. 관계자가 사용해야 하는 옥내소화전이 문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는 등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감지기가 빠져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는 고정되지도 않은 채 노출되어 있었음.
- 윤건영 의원이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반얀트리 호텔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기장 소방서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제출한 감리 결과보고서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현장 검증을 통하여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화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발생할 수밖에 없던 화재참사 - ‘소방계획서도 없이 방치된 소방안전’

-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화기취급의 감독 등의 역할을 해야 함.

3. (3차)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공사 현장 화재 관련 추가 (5건)

순	요구내용	자 료	비고
1	사용승인 이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자료	해당없음	시행일 : '22.12.1 허가일 : '21.12.3 *법 시행 이전 허가 대상
2	사용승인 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료	[첨부] 13	
3	해당 대상물에서 수립한 소방계획서 자료일체	해당없음	미작성 확인함(과태료 사항)

그림 23. 사용승인 허가 이후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현장의 소방계획서를 윤건영 의원실에서 부산시에 추가 자료로 요청하였으나 미작성 되었음을 확인한 자료 출처 : 윤건영 의원실

-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청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반얀트리 리조트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1일 뒤인 30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 그리고 16일 뒤인 1월 15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6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화재 당시 7명에 이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었던 셈이다”라고 밝혔음. 그러나 선임만 되었을 뿐 그 역할은 반얀트리 호텔 현장에서 부재했던 것으로 보임.

-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계획서 등의 조항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및 구조, 소방시설 점검계획,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방화시설의 점검, 화재 시 피난

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포함한 소방안전 관리 등 15개의 호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음. 관련 법령을 통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주어져 있지만 작성 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출의 의무도 없다는 제도적 허점도 지적됨.

-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한 채 소방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던 반얀트리 호텔 공사현장에서 화재참사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해왔던 것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4) 소방시설 ‘최초점검’조차 불가능했던 현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신축 건축물은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통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방시설의 주요 부품 등이 법령 기준에 부합한지를 점검하는 자체점검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최초점검’은 건물사용 승인 후 이루어지는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인

한 소방시설 변경사항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2월 도입된 것임.

- <FPN-소방방재신문>은 ‘반얀트리 리조트는 사용승인일인 지난해 12월 19일 기준으로 올해 2월 17일까지 최초점검을 실시해야 했다. 소방청이 윤건영 의원실(구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전문업자가 투입된 상태였다. 최초점검 진행기간에 불이 났던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3월 6일, 경찰이 지상 1층과 지하1층 발화부 주변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화재감지기와 유도등, 시각경보기 등 미설치 소방시설이 다수 있었다고 발표한 바, 이는 애초부터 소방시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최초점검 자체가 무의미했음을 나타냄. 또한 최초점검을 발주한 주체가 건물 소유자나 운영자가 아니라 시공사였다는 점도 짚어볼 대목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u>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u>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u>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u>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5) 방치된 현장 - 특이사항 “현장 자료조사 현재 전 건물 공사중임”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반얀트리 호텔과 같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용승

인이 완료된 신축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완료 후 6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인 조사관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함.

- <FPN-소방방재신문>은 소방청이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내준 한 달 뒤인 올해 1월 16일 4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은 반얀트리 호텔의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진행한 뒤 “자료조사 현재 전 건물 공사 중임”이라는 골자를 기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음.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음을 확인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이후 현장의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임

출력일시 : 2025-02-14 15:23:37 출력자 : 객성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

1. 일반현황

대상명	오시리아 별장형 콘도(반얀트리)	위 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445	전 화	주간:02-2190-9800/0야간:T/방재실:T
소유자		관리자		소방안전 관리자	이호진 위험물안전 관리자
주용도	복합건축물	취약장소	연회장동 및 로비동 등 숙박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건 물 조	양식(목)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가 지상12층 / 지하3층 20 동 연 면 적 : 95862.16 ㎡ 바닥면적 : 0 ㎡				
특 이 사 항	자료조사 현재 전 건물 공사중임				

그림 25.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사용승인 허가 이후 2025년 1월 16일 진행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자료조사 현재 전 건물 공사중임'라는 특이사항을 제출하였음. 출처 : 윤건영 의원실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가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진행된 소방 활동 자료조사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인지했다면 자료조사자들과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음.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았던 현장이 방치되면서 결국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게 된 것임.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
 ①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관할 면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연 1회 이상

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감리결과보고서로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9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내용) ①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의 위치·구조·용도·피난계획·비상용승강기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 안의 위험물이나 그밖에 연소물질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옥외에 송수구가 부설된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의 구조 및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소방대의 배치 및 중계 송수에 관한 사항
5. 소방대의 긴급 통행에 관한 사항
6.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소방활동구역, 강제처분 및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7. 재난위험이 있는 지역(건축물 포함) 및 출동로 등 위험요인
8. 소방차 부서, 옥내소화전 점령, 건물진입, 인명구조, 주변 위험요소 및 연소 확대 여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소방지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점검결과 및 위험등급 등 각종 정보를 소방활동 정보카드에 첨부하여 소방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3-2.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에서 드러난 법 위반 문제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주식회사 삼정기업, 주식회사 삼정이앤씨, 루펜티스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총체적으로 위반하였음.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1호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실질적으로 설정하지 않았음. 형식적으로 기재된 경영방침을 내세울지 모르나,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령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에 관한 것 등으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경영방침이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 중처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성정했다고 평가할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만덕건설’ 사건) 참조}.
- 법제 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령 제4조 제3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대책의 수립·이행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책임자 등은 위 업무처리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포함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하고, 이러한 확인 절차에는 사업장에서 실제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의미함.{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 3091 판결(‘두성산업’ 사건) 참조}.
- 법제 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4호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고, 편성된 예산마저도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았음. 형식적으로, 즉 서류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사 결과를 통해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

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노3091 판결 ('두성산업' 사건) 참조}.

- 법제 4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 평가가 불가능하였음. 법 조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이 사고 이전 반기에 해당하는 동안에도 공기 맞추기에 급급한 위험 작업이 지속하고 있었음을 작업자들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6호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직업환경의학과의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법상 안전관리자 등은 부재하였음. 특히 2024년 12월에 퇴사한 안전보건관리자를 법정기한 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 841명의 작업자가 혼재하는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 작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법 제 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7호 위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작업자들의 위험 신고나 개선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음. “여러 업체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나가는 입구 문에서 용접을 막 하고 있고 이러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라거나, “문제는 다른 게 없고, 원청 관리자가 없는 게 최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현장 작업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의견수렴 체계의 부재가 확인됨.
-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반: 시공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의 대응 매뉴얼을 구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작업자 대피가 지연되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위반

- 시공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참사 당일 현장에 없었음에도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시행령 제16조를 위반하여 2024년 12월 안전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신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무 위반

- 시공사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 2(화재감시자)를 위반하여 용접·용단 작업하면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다량 존재했음에도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초기 화재 대응에 실패하였음.
-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제1호를 위반하여 용접·용단 작업 전 작업장 내 위험물과 가연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물질과 가연성 자재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음.
- 시공사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3조(소화설비)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위험이 큰 용접·용단 작업 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물 공급 밸브를 고의적으로 잠가둔 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설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
-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4조(방화조치)를 위반하여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자재 및 건축 폐기물을 출입문과 통로에 적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작업자들의 대피를 심각하게 저해하였음.
- 하청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를 위반하여 용접·용단 작업 현장 주변의 페인트, 목재, 종이, 천 등 가연성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격리하거나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

○ 안전교육 및 훈련 의무 위반

- 시공사와 하청업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시행규칙 제26조를 위반하여 현장 작업자들에게 화재 위험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특히 화재 당일 처음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채용 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음.

-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제18조(비상구 등의 유지), 제19조(경보용 설비 등)를 위반하여 작업장 내 비상구 위치, 대피경로, 소화기 사용법,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 작업자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피경로도 등 필수 안전표지를 전혀 게시하지 않았음.

○ 도급작업 시 안전관리 의무 위반

-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시행령 제53조의 2를 위반하여 도급인으로서 40여 개 하청업체, 841명의 관계수급인 소속 작업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등)를 위반하여 도급인으로서 관계 수급인이 취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급인의 위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루펜티스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를 위반하여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공사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단축하여 안전수칙 준수 없이 공사를 강행하였음.

3)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반

- 시공사, 시행사, 하청업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성명불상) 등은 2025년 2월 14일,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6명의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 화재 발생 시 필수적인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비상 탈출 방향의 유도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들이 안전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질식사하게 함. 또한,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고, 용접작업의 편의를 위해 밸브가 고의로 잠겨 있었으며,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커버가 씌워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음. 화재 경보음이 제대로 울리지 않았거나, 잦은 소방점검으로 인해 작업자들이 실제 화재 경보를 단순 시범 작동으로 오인하는 상황을 방치 하였으며, 화재 전에도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사고 보고와 원인 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 없이 작업자들의 자체 진화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시공사 등의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 및 법규 위반 행위는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함.

4) 건축법 위반

- 건축주, 공사시공사,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위반하여 허위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부실한 감리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
- 시공사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 등)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도면과 달리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건물을 사용.
- 시공사는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2항을 위반하여 방화벽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를 위반하여 부산시에 제출한 준공 도면(방화계획도)에 따른 B동 1층의 3구역 방화구획을 실제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방화구획 위치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방화 셔터를 설치하지 않았음.

5)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를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 기준에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를 위반하여 부실한 소방시설 상태임에도 허위로 감리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기장소방서는 2024년 12월 16일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했으나, 실제로는 화재 당시 옥내 소화전이 문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커버가 씌워져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일부 구역 천장에는 화재감지기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고정되지 않은 채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현장 확인이 필요한 숙박 시설임에도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였음.

6) 소결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수의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 결과였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불이행,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미비, 방화구획 미설치, 소방시설 부실시공과 허위 감리 등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안전관리자 미선임, 화재감시자 미배치, 스프링클러 밸브 차단, 대피로 미확보 등은 6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

4. 화재 참사 이후 문제점, 그리고 과제

4-1. 화재참사 이후 관계기관의 고압적인 태도

1) 유족에게조차 비공개로 일관하는 기관의 태도

-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가 발생한 당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부산시, 부산경찰청 및 검찰 등은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번 화재참사에 대하여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명하고,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함.
- 하지만 정작 유족에게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원인과 시공사의 책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먼저 설명해주지 않았음. 유족에게는 참사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난 2월 17일이 되어서야 부산시가 주관하는 유족 지원에 관한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됨. 하지만 유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진상조사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음. 이후 부산시가 주최한 비공개 합동 설명회도 개최하였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재차 확인해주는 설명회였음. 참다못한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태도만 확인함. 이후 부산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 면담 등을 통하여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하였고, 결국,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다 되어서야 부산경찰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됨.

2) 진심 어린 애도는커녕 유족을 두 번 울리는 부산시

- 부산시는 2월 14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면서, 피해자의 생계지원, 사고수습 지원,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장례지원 및 분향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음. 2월 17일 부산시가 주관한 설명회에서 유족이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후 부산시는 ‘사망자가 10명 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라며 합동분향소 설치를 거부하였음.
- 유족과 피해자를 위한 진심 어린 애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추모임에도 관계기관의 고압적인 자세와 비공개로 일관하는 태도로 인하여 유족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과정이었음.

3) 도대체 ‘당사자’는 누구인가?

- 2월 22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는 유족과 함께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반얀트리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유족의 공동 요구안을 전달하였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화재가 발생한 현장을 찾아 화재 발생 원인과 참사 당시의 현장의 모습은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운동본부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현장 진입을 막았음. 1시간 넘게 유족과 부산운동본부를 대상으로 경찰은 대치하다가 결국, 부산운동본부를 제외한 유족과 2명의 법률대리인만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산시 주최 비공개 합동 설명회와 부산경찰청에서 개최한 유족 설명회 모두 부산운동본부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참가하지 못하게 막음. 심지어 관계기관의 비공개 입장, 폐쇄적인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산운동본부에게 오히려 유족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며, 늦어지게 되는 현장 확인절차와 설명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산운동본부에게로 돌리는 상황이었음. 그리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또한, 유족과 함께하는 면담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비공개 입장을 내세웠음.
-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의원에게 자료 요청과 함께 부산운동본부 차원에서 공개정보청구제도를 통하여 반얀트리 화재 참사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청구하였으나 ‘수사 중,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비공개 답변을 받았음.

4-2. 하청노동자에게 배제된 지원대책

1) 일용직 노동자와 하청 업체의 공사대금 및 임금 문제

-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로 하청 업체와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반얀트리 현장에서 대규모 건설현장이었기에 일했던 노동자들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노동자도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됨. 호텔 완공이 5월이었고, 2월에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에 공사계약 기간이 남았던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참사로 작업은 중단이 된 상황이며, 현재 노동자 대부분은 전국적으로 뿔뿔이 흩어진 상황임.
-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로 작업중지가 내려진 이후 시공사는 하청 업체에게 기간 진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하청 업체는 고용되었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있는 하청 업체는 작업팀과 노동자에게 공사단가 및 임금을 보전할 수 있으나, 소규모 업체는 시공사가 지급해주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인터뷰를 했던 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기도 하였음. 더군다나 반얀트리 호텔 시공사인 삼성기업과 삼성E&C는 2월 27일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신청을 하였음.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로 피해를 본 하청 업체와 노동자들

에게 제대로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했는지 노동부는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그림의 떡’인 심리지원 대책

“아까 걸어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연기를 마셔도 조금 마셨으면 아무 말 안 하실 거예요. 많이 마시면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 트라우마가 안 생겨요. 거의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은 불과 연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다치지도 않았고 연기 도 안 마셨는데 왜 자꾸 그 생각이 나냐면 000씨의 내가 눈을 봤단 말이에요.

비니를 쓰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 눈빛을 서로 교환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현재 아무 입장도 아니고 아무 관련도 없는 데 그 눈빛 한 번 본 게 이제 자꾸 떠오르고 하필이면 또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 추측하고 비슷하게 또 결론이 그리 나니까 더 자꾸 떠오르는 거지, 이게.” - 작업자 D

- 화재 참사 당시 841명의 노동자가 참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음. 화재 참사를 목격하거나 하루아침에 동료를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그 당시 화재 참사 과정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겪으며 힘들게 일상을 보내고 있거나, 다시 건설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도 많을 것임. 물론, 화재 참사 후 부산 직업 트라우마센터에서 직접 화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관련 지원 활동을 진행한 상황이었음.
- 하지만 이후 작업이 중단된 사고 현장에는 시공사 소속의 노동자와 관리자가 대부분이었으며, 화재 참사 당일 작업했던 노동자 대부분은 하청 노동자이기에 현장을 떠나거나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직업 트라우마 센터이지만 진상조사팀에서 면담했던 작업자들은 심리상담 또는 심리 지원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심리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음.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때는 노동부, 부산시와 같은 관련 행정기관이 화재참사를 겪은 노동자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함. 안타깝게도 인터뷰를 했던 작업자 모두는 그러한 안내전화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하였음.
- 이렇듯 중대재해 참사 과정에서 해당 피해자와 동료 노동자를 위하여 더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함.

4-3. 과제

- 현재까지 경찰과 노동부의 수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정에서 제한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기에 왜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가 ‘참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더 많은 조사와 원인규명이 필요함. 이러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될 때 그에 맞는 재발 방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음.
- 그리고 이번 화재참사에서 ‘사용승인’ 과정에서의 현장검증의 문제, 미흡한 법제도의 보완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기에 이번 화재 참사로 확인한 관련 법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유족과 노동조합, 시민운동 단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화재참사와 관련한 정보-예를들어 재해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함.
- 이번 보고서는 반얀트리 호텔 화재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1차 보고서임. 향후 2차, 3차 보고서를 통하여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가 제대로 규명되어 더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람.

첨부자료 1. 반얀트리 호텔 착공신고서 (출처 : 윤종오 국회의원 자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2.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2022-3400000-0075203	접수일자 2022-05-24	처리일자 2022-05-31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건축주 루팜티스주식회사 전화번호 (전화번호 : 051-745-0315)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4403호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①지번	
허가(신고)번호	2021-창조건축과-신축허가-275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2022년05월25일		준공예정일자	
② 설계자	성명	윤재일, 강성찬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8, 종합빌딩 (전화번호 : 02-2187-2345)		
	도급계약일자	2021년10월28일	도급금액	
③ 공사시공자	성명	박상천 외 1인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주)삼정기업	도급금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1444110000150	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222-13, 5층 (전화번호 : 051-580-4777)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성명 자격증	자격번호	
④ 공사감리자	성명	김수원, 박병욱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현로 54 (전화번호 : 02-529-1855)		
	도급계약일자	2022년04월05일	도급금액	
⑤ 현장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천장재 ☐ 단열재 ☐ 지붕재 ☐ 보온재 ☐ 기타 ☒ 해당 없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여부			
⑥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건축) 박상언 (서명 또는 인)	건축구조기술사	10191010276Q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2, 영년빌딩 4층, 누리구로엔지니어링 (전화번호 : 02-2057-0550)
	(토목) 원정운 (서명 또는 인)	토질및기초기술사	03169100012C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0길 9, 금천빌딩2층 (전화번호 : 02-2057-1844)
	(건축) 이동락 (서명 또는 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9614601010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9길 26, 용도빌딩 (전화번호 : 02-2203-5691)
	() 황현상 (서명 또는 인)		97151010079E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아로7길 20, 서울송 크로싱 디자인타워 21F 901호 (전화번호 : 02-2117-0300)

210mm×297mm[백상지(80g/ml) 또는 중질지(80g/ml)]

첨부자료 2. 기장소방서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출처 : 윤종오 국회의원 자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1.22>

제 120 호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통의용)							
완공검사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오시리아 별장형 콘도		주요용도		숙박시설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44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3층, 지상 12층, 19동, 신축					
	대지면적	41,271.5㎡	연면적	95,862,239㎡	건축면적	14,049.032㎡	
소유자	성명 (기관 또는 법인명)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967. 07. 1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전화: 02-2190-9800)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호(명칭)	㈜용도엔지니어링	등록번호	제강남95-21호	대표자	허종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9번길 26 (전화: 02-2203-5691)					
소방공사 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상호(명칭)	㈜나이스엠건축사 사무소	등록번호	제서초2015-02호	대표자	김홍룡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한로 54 (전화: 02-568-1855)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명칭)	㈜대한이엔지	등록번호	제1900-86호	대표자	박대지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74번길 72 (전화: 051-633-2119)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용	시설	해당 세부설비명		신고설비		완공 여부	
	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화설기체소화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화설기체소화설비		완공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완공	
	피난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승강식피난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기구(승강식피난기)		완공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완공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완공	
	방염물품	-		-		-	
	실내장식물불연화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12 월 16 일 기장소방서장  ※ 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확인 서함입니다.							

첨부자료 3.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 (건축물에 따라 제출서류 상이함)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준비서류>

1. 사용승인 도서 - 건축평면, 입면, 단면, 주차, 조경, 우오수계획도 등
2. **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일지 공정별 단계별 체크리스트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3. 각종영수증 - 감리비완납확인서, 면허세, 등록세, 정화조면허세, 구조감리비지급내역서, 설계의도구현내역서
4. 하자보수이행증권 (공동주택)
5. 필로티건축물 시공 동영상 파일-기둥, 바닥, 보 등
6. 차면시설 설치확인서 - 시공사진
7. 도로관리대장 - 대지일부를 도로로 제척한 경우
8.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9. 승강기검사 합격증명서
10. 전기사용전 점검확인증
1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
12. 급수공사비 청구서, 영수증
13. 도시가스 공급(예정)확인서
14. 보일러 설치확인서
15.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16. 수도계량기 동파방지사진
17. 하수관거 CCTV 영상 파일
18.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영수증
19. 배수설비 준공관련서류-준공검사 및 완료보고서, 준공검사 신청서, 준공및 폐공완료, 폐쇄완료신고서, 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배수설비사진첩
20. 정화조 준공서류-설치사진, 정화조제조업자표시, 시공사진 등
21. 단열재-준불연재 시험성적서, 납품확인서,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22. 각종자재 성능서 - AW창호, AW단열도어, 주택 PVC창호, 방화도어(방화문품질관리서) 등 시험성적 및 납품확인서
23.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총괄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24. 경계복원측량결과서 (국토정보공사, 지자체마다 제출여부가 다름)
25. 건물번호 부여 안내문, 새주소 설치 사진 (근경 및 원경사진)
26. 조경설치확인서 (조경설치 사진첨부)
27. 주차장전경 사진 및 주차장관리카드
28. 필로티 및 외벽 단열재 사진
29.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
30. 국기봉설치 사진
31. 절수설비 환경표시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및 납품확인서 (시공 사진첨부)
32. 소방관진입창 마크 설치 시공사진

- 33. 재활용쓰레기함 설치사진
- 34. 범죄예방 시설 설치사진
- 35. 건축물관리계획서
- 36. 층간 차음재 설치확인 시공사진
- 37. 기술지도완료증명서,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지하층)**
- 38. 에너지절약계획 이행확인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시)
- 39. 녹색건축물이행확인서 (서울시)
- 40.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확인 사진 제출 및 현장조사 (다세대 10세대 이상부터 적용)

첨부자료 4 - 기장군청의 사용승인서 (출처 : 윤종오 국회의원 자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1. 29.>

사용승인서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 건축물의 개요입니다.

건축구분	신축	허가(신고)번호	2021-창조건축과-신축허가-275
건축주	케이비부동산신탁(주)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연화리		
지번	5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41,271.5 m ²		
건축물명칭	반안트릭 해운대 부산	주용도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초당콘도미니엄)근한생활시설)
건축면적	14,049.032 m ²	건폐율	34.041 %
연면적 합계	95,862.239 m ²	용적률	127.323 %
가설건축물 건축기간			
그 밖의 기재사항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77조의14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을 체결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께서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기장군수			
			
210mm×297mm [모든용지(2종) 70g/m ²]			

- 50 -

첨부자료 5. 화재참사 사고당일 관계기관의 입장 (기관별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내용 취합)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14)
 -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 (한경닷컴)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상황판단회의 주재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함.
2. 고용노동부 입장(보도자료 및 언론참조)
 - 2/14(금)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본부장 김문수) / 고용노동부동부지청 작업중지명령 :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 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힘.
 - 2/15(토) 14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긴급 개최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부산시.김장군 등 관계기관 참석 :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 철저 대응 밝힘.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예방 긴급점검을 실시 제기
 - 2/16(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 긴급점검실시 : 점검내용은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 제기
 - 2/16(일) 10:30경 합동감식 실시 : 국립과학수사원·과학수사대·국립소방연구원·재난안전연구원·고용노동부·전기안전공사·안전보건공단·검찰 등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29명) 참석
3. 부산시 (보도자료 참조)
 - 2/14(금)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본부장 : 박형준시장)
 - 재해구호기금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생계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 입원 병원에 직원을 파견해 의료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 지원. 시와 군의 안전보험 등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추후 사고수습 진행 상황에 따라 장례지원 및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부산시 보도자료)
4. 부산경찰청·검찰
 - 2월 14일부터 부산경찰청 3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 구성 : 현장 CCTV 분석 및 목

격자 진술 확보 중

- 부산지검 동부지청 :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특별수사팀-박주성 지청장과 김연실 차장검사 등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 투입)을 구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발표함.
- 2/17(월) 9시경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사망자 6명에 대한 부검실시 : 1차 감식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질식사 확인
- 2/18(화) 9개 기관 압수수색 진행 :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협력업체 4곳, 사용승인을 내준 기장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및 기장소방서도 포함함.